

산학협력중점교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05. 0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정의, 자격, 채용절차, 임용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산학협력 중점교수라 함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교원의 구분) ①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임용형태에 따라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고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③ 비전임교원은 직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격) ①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산업체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하며 산업체 경력의 범위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 절차에 의하여 전환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신규임용)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신규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탁월한 업적이 인정되어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채용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채용공고) ①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공개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외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래의 기간 동안 채용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전임교원: 지원마감일 기준 15일
 2. 비전임교원: 지원마감일 기준 5일
- ② 채용공고에는 채용분야, 지원자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서의 접수) 공개채용 지원서류의 접수방법은 인터넷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때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때 접수방법은 교무처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대학(원)장 또는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추천서
3. 학력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4. 연구·산학협력실적목록 및 실적물
5. [별표 3] 산학협력 중점교수 업무 활동 계획서
6. 기타 산학협력 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는 서류

- 제9조(자격심사위원회) ① 각 대학(원) 또는 행정부서는 산학협력 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이하 “자격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자격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 또는 소속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채용을 위한 심사기준 수립,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심의
 2. 특별채용 대상자 심의
 3. 승진 및 재임용 심의

- 제10조(공개채용) ①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채용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공개채용은 '[별표 2]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절차'를 따른다.
 2. 대학(원)장은 자격심사위원회 및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단, 대학(원)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자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3. 교무처장은 본부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면접결과에 대한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면접 대상자를 선정한다.
 4.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 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 ②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16조에 의한 인사자문(검증)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비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채용은 '[별표2]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절차'에 따라 총장이 발령한다.

- 제11조(특별채용) ①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 특별채용을 진행하고자 하는 대학(원) 또는 행정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 특별채용 교원인력운영계획(이하 ‘교원인력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한다.
1. 대학(원) : 학과(전공) 교수회의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
 2. 행정부서 : 부서 심의
- ② 교무처장은 대학(원) 또는 행정부서에서 제출한 교원인력운영계획을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의뢰하고, 총장은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채용분야 및 규모를 이사회에 제청한다.
- ③ 이사회의 교원인력운영계획 심의 후 교무처장은 그 결과를 해당 대학(원)장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 ④ 이사회에서 교원인력운영계획이 승인된 경우 해당 대학(원)장 또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대학(원) : 해당 학과(전공)교수 과반수의 추천과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
 2. 행정부서 :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
- ⑤ 특별채용 추천 대상자 선정 이후의 절차는 제10조(공개채용) 제1항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표2]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절차'에 따른다.
- ⑥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16조에 의한 인사자문(검증)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계약기간은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의한다. 다만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② 비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속하여 1회에 한하여 재발령 할 수 있다. 단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는 계약 내용에 따른다.

제13조(의무) ①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 연구활동

- 가. 기술이전
- 나. 국제·국내 특허출원·등록
- 다. 외부연구비수주
- 라.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 마. 교원 창업
- 바. 국가기관 연구제안서 제출
- 사. 기타 산학협력 관련 연구활동

2. 산학협력 교육활동

- 가. 현장실습 지도
- 나. 캡스톤 디자인 지도 및 출품
- 다.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 라. 학생취업 연계
- 마. 학생창업 지도
- 바. 기타 산학협력 관련 교육활동

3. 산학협력 봉사활동

- 가. 기술·경영자문
- 나. 산학협력 가족회사 유치
- 다. 산업체 파견 활동
- 라. 산업체 방문 특강
- 마. 기타 산학협력 관련 봉사활동

4. 산학협력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추진

5. 기타 본교 산학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 ②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계약 시 계약기간 동안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표 3] 산학협력 중점교수 업무 활동 계획서'와 '[별표 4] 산학협력 중점교수 업무활동 평가 기준표'를 작성하고 자격심사위원회 및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 활동 계획서에는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수행업무에 대한 정의와 계획이 계약기간에 따라 세부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업무 활동 평가 기준표에는 세부항목별 기준 점수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14조(책임강의시간) ①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책임강의시간은 「교원보수규정」을 따른다. 단, 업무 수행계획에 따라 자격심사위원회와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임강의시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비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책임강의시간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처우) ①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처우는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의한다.

- ② 비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처우는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경력산정)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경력산정은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른다.

제17조(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 ① 승진심사 대상 교원의 실적평가는 승진예정일 4개월 전(4월말 또는 10월말)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며, 승진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승진소요기간 동안 「[별표 5]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행실적 평가표」의 실적 점수가 기준 점수의 90% 이상

2. 「[별표 6] 교원심사평정표」의 점수가 평균 80점 이상

- ② 재임용심사 대상 교원의 실적평가는 재임용 예정 4개월 전(4월말 또는 10월말)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며, 재임용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동안 「[별표 5]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행실적 평가표」의 실적 점수가 기준 점수의 80% 이상

2. 「[별표 6] 교원심사평정표」의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

- ③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산학협력 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하며, 자격심사위원회는 「[별표 5]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행실적 평가표」와 「[별표 6] 교원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 ④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승진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단, 대학(원) 소속이 아닌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경우에는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 ⑤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재임용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단, 대학(원)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의하여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전환된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에 대하여는 「전임교원 임용규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비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재발령) ① 비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실적평가는 재발령 예정 2개월 전(6월말 또는 12월말)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며, 재발령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임용계약서에 별도의 재발령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

2. 임용계약서에 별도의 재임용 기준이 없는 경우는 「[별표 5]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행실적 평가표」의 실적 점수가 기준 점수의 80% 이상

- ② 재발령을 위한 평가는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산학협력 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하며, 자격심사위원회는 「[별표 5]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행실적 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 ③ 비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재발령은 자격심사위원회 및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재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단, 대학(원)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자격심사위원회 및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업적평가) ①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업적평가는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 ② 비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에 대하여는 업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전환 및 재전환) ① 재직 중인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사업 추진에 적합한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통해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전환된 교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 전임교원으로 재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일반 전임교원으로 재전환할 수 있다.
③ 전환 및 재전환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경희학원정관」 및 본교의 교원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학협력실적-교육활동실적 평가 기준표

[산학협력실적-교육 및 봉사활동 실적 평가 기준표]

순번	구분	평가지표	주요내용	평가 기준	비고
1	교육 실적	현장실습지도	학생들의 <u>현장실습¹⁾</u> 을 위해 지도교수로 참여한 실적	15점/학생	학부학생만 해당
2		캡스톤디자인 지도 및 출품	학생들이 <u>캡스톤 디자인²⁾</u> 을 통해 제작한 설계물을 교내외 경연대회에 출품하도록 지도하거나 입상한 실적	5점/건	
3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실적	100점/건	체결 건수
4		학생취업 연계	학생과 산업체간의 연계를 통해 취업을 지원한 실적	20점/건	학부학생만 해당
5		학생창업 지도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 지도한 실적	100점/건	창업한 경우에 한해 점수 부여
6	봉사 실적	기술·경영지도	연구수행 결과 등을 활용하여 기업 등에 기술 또는 경영지도를 실시한 실적	10점/건	대상기업의 산학협력 가족회사 협약 필수
7		산학협력 가족회사 유치	대학과 산업체 간의 산학협력 계약 또는 협약체결을 통해 가족회사를 유치한 실적	10점/건	
8		산업체 파견활동	방학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에서 1개월 이상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한 실적	100점/건	

- 주) 1. 현장실습 : 교육내용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실습 기관 간의 협약체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이뤄지고 학점으로 인정되는 대학 교육과정(학기제는 14주(500시간) 이상, 계절제는 4주(160시간) 이상 기간동안 운영 기준)
2. 캡스톤디자인 : 교육과정 중에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는 교육 활동
3. 기타 산학협력실적 평가항목의 정의는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과 「교수업적평가시행세칙」을 따름
4. 평가 기준표 내 실적 외 별도의 실적평가가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 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와 캠퍼스 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음

[별표 2]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절차

가.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공개채용)

채용절차	가형(행정부서 소속)		나형(단과대학 소속)	
	담당부서	내용	담당부서	내용
① 채용공고	행정부서	통합 공고 또는 개별 공고	단과대학	통합 공고 또는 개별 공고
② 서류접수	행정부서	개별접수	단과대학	개별접수
③ 1차심사(서류심사)	행정부서	서류심사	단과대학	서류심사
④ 2차심사	행정부서	서류 및 면접진행	단과대학	서류 및 면접진행
	행정부서	산학협력 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 개최 ([별표3], [별표4] 검토 및 확정)	단과대학	산학협력 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 개최 ([별표3], [별표4] 검토 및 확정)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
	교무팀	본부 면접심사	교무팀	본부 면접심사
⑤ 면접심사	교무팀	해당 절차 진행	교무팀	해당 절차 진행
⑥ 캠퍼스 교원인사소위원회				
⑦ 총장면접				
⑧ 교원인사위원회				
⑨ 교원 인사발령 및 관련부서 안내				

나.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특별채용)

채용절차	가형(행정부서 소속)		나형(단과대학 소속)	
	담당부서	내용	담당부서	내용
① 채용분야 및 규모 결정	행정부서	부서 심의	단과대학	학과(전공)교수회의 및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
② 이사회 승인	교무팀	해당 절차 진행	교무팀	해당 절차 진행
③ 대상자 선정	행정부서	캠퍼스 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	단과대학	학과(전공)교수 과반수 추천 및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
④ 1차심사	행정부서	서류 및 면접진행	단과대학	서류 및 면접진행
	행정부서	산학협력 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 개최 ([별표3], [별표4] 검토 및 확정)	단과대학	산학협력 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 개최 ([별표3], [별표4] 검토 및 확정)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
	교무팀	본부 면접심사	교무팀	본부 면접심사
⑤ 면접심사	교무팀	해당 절차 진행	교무팀	해당 절차 진행
⑥ 캠퍼스 교원인사소위원회				
⑦ 총장면접				
⑧ 교원인사위원회				

⑨ 교원 인사발령 및 관련부서 안내				
------------------------	--	--	--	--

다. 비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채용절차	가형(행정부서 소속)		나형(단과대학 소속)	
	담당부서	내용	담당부서	내용
① 채용공고	행정부서	통합 공고 또는 개별 공고	단과대학	통합 공고 또는 개별 공고
② 서류접수	행정부서	개별접수	단과대학	개별접수
③ 1차심사	행정부서	자격요건 등 심사	단과대학	자격요건 등 심사
④ 2차심사	행정부서	산학협력 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 개최 ([별표3], [별표4] 검토 및 확정)	단과대학	산학협력 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 개최 ([별표3], [별표4] 검토 및 확정)
	교무팀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
⑤ 교원 인사발령 및 관련부서 안내	교무팀	발령 및 안내	단과대학	발령 및 안내

[별표 3] 산학협력 중점교수 업무 활동 계획서

산학협력 중점교수 업무 활동 계획서

성명	소속	주민번호	-	지원분야	산학협력 중점교수
1. 산학협력 항목별 세부달성계획 작성 2. 본교 산학협력 활성화 및 실적 제고를 위한 수행계획 작성 2. 기타 산학협력 계획 등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페이지를 추가하여 기재 가능함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임용되어 위와 같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별표 4] 산학협력 중점교수 업무 활동 평가 기준표

산학협력 중점교수 업무 활동 평가 기준표

성명		직급	산학협력 중점교수
소속		임용(계약)기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실적산출 적용기준	기준 점수
1. 산학협력 연구실적	기술이전료수입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	
	국내·국제 특허 등록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교원 창업		
	국가기관연구제안서 제출		
2. 산학협력 교육실적	현장실습 지도	[별표1]	
	캡스톤디자인 지도 및 출품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취업 연계		
	학생창업 지도		
3. 산학협력 봉사실적	기술·경영 지도	[별표1]	
	산학협력 가족회사 유치		
	산업체 파견 활동		
합계			

※ 산학협력 중점교수 업무 활동 계획서에 따라 기준 점수 작성

※ 평가항목별 기준 점수산출 방법

- 산학협력실적 중 연구실적 점수산출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을 따르며, 교육 및 봉사실적은 본 규정 [별표 1]을 적용함.
- 최초 업무 활동 계획서 작성 시 확정한 산학협력 연구실적은 기준 점수의 최대 50%까지 논문실적으로 대체 가능함.
이때 논문실적산출 적용기준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을 적용함.
- 평가항목별 기준 점수는 최초 업무 활동 계획서 작성 시 산학협력 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와 캠퍼스교원인사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의 변경이 필요할 시 산학협력 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 및 캠퍼스교원인사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가능함

4. 기타 사항 등은 계약서 작성 시 별도 명시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을 우선 적용함

산학협력 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5]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행실적 평가표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행실적 평가표

피평가자	소속		
	성명		
	직급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기준 점수	실적 점수
1. 산학협력 연구실적	기술이전료수입		
	국내·국제 특허 등록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교원 창업		
	국가기관 연구제안서 제출		
2. 산학협력 교육실적	현장실습 지도		
	캡스톤디자인 지도 및 출품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취업 연계		
	학생창업 지도		
3. 산학협력 봉사실적	기술·경영지도		
	산학협력 가족회사 유치		
	산업체 파견 활동		
합계			

산학협력 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평가항목 변경 시 세부평가내용과 점수 기준은 해당 산학협력 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와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함

[별표 6] 산학협력 중점교수 교원심사평정표

교원심사평정표

피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 (인)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평가점수
1. 윤리성	30	1-1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1-2 인간관계의 원만성		
		1-3 교수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타 업무 종사 관계		
		소계		
2. 산학협력 실적 평가	40	2-1 산학협력실적 질적평가		
		2-2 산학협력 수행실적의 적절성		
		2-3 산학협력 수행실적의 대학 기여도		
		2-4 산학협력 활동 계획의 적절성		
		소계		
3. 강의평가 및 교육내용	30	2-1 강의평가점수		
		2-2 강의콘텐츠 개발 및 신교육기법 사용 (강의진행 방법과 개선노력 연구)		
		2-3 강의계획서		
		2-4 수업의 충실성(휴·결강여부 등)		
		소계		
합 계	100	총 계		
종 합 의 견				

- * 각 평가내용의 소계는 각 평가내용 평가점수의 합계이며, 평가항목의 배점점수를 상회할 수 없음
- * 평가항목별 평가내용과 세부 배점 기준은 산학협력 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 및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함
- * 최소기준 : 승진 시 80점, 재임용 시 70점 이상